

- 구미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0년 11월 16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0년 11월 16일

라. 상정일자 : 2000년 11월 21일

제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 훈 영

나. 제안이유

-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구미시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,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
-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 설치
- 회계관직 지정 및 공인제작 관리
-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- 6인 이내
-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

라. 참고사항

- 식품위생법 제71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3조 제7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윤 구

- 이 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을 정부의 지방화 정책에 따라 시·군에서도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(2000. 1. 12.법률제6154호)된,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,
- 기금의 조성 및 운용 등 제정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령의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, 기타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결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안 가결